

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태훈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3. 개정이유

- 포상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 수여 자격 미달자에 대한 표창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,
-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비(안 제10조제3항)
-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조항 신설(안 제12조)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취소 조항 신설(안 제1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
  - 에 의한 → 에 따른

- 약칭사용 :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라 한다)
-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
- 자 → 사람
- 기타 → 그 밖의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는 그 간 수여 제한 규정 및 환수 규정의 부재로 자격 미달자에 대한 포상 수여 제한 및 부정 포상 수여자에 대한 환수 조치가 곤란하였음.
- 이에,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에 표창금지 조항을, 제13조에 포상 취소 조항 신설을 통해 자격 미달자와 부정 수여자에 대한 제한 및 환수의 곤란을 해결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 정비를 통해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였음.
- 따라서,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제도 운용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